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내 용

1.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작업계획 미공개(남구 ○○○○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작업계획¹⁾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²⁾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의 규정에 따르면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³⁾할 수 있도록 되어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내용,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2) 공개대상 :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석면 해체·제거를 신고한 사업

3)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는 노사누리시스템에 신고서를 등록하고, 노사누리시스템과 연계된 올바로시스템 www.allbaro.or.kr, 석면관리종합정보망 asbestos.me.go.kr을 통해 특별자치도, 시·군·구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 확인 가능

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에는 작업계획 및 배출허용기준,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등을 각 기관에서 운영·관리 중인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관할구역에서는 ○○○○○○○○○○○ 조성공사 등 2개소에서 2015. 12. 3.부터 2015. 12. 30.까지 건축물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남구 ○○○○과는 아래 [표1]과 같이 관할구역 2개소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었음에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작업계획을 국민(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남구청에서 운영·관리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작업계획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석면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1]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미공개 현황

연번	사업장(작업장) 명칭	작업내용	면적(㎡)	작업기간	비고
1	○○○○○○○○○○센터 조성공사	석면해제·제거	888	2015. 12. 8. ~ 12. 9.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작업계획 미공개
2	○○대로 000번지 내 철거공사	석면해제·제거	3,221	2015. 12. 3. ~ 12. 30.	

※ 광주광역시 남구 ○○○○과 제출자료 재구성

2.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비산농도 미측정 및 결과 미공개(광산구 ○○○○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할구역에서는 ‘○○○○○ ○○공장 지붕개선 3차 공사 중 지붕철거 및 폐기물처리’ 등 2개소에서 2015. 4. 27.부터 2015. 12. 31.까지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과는 아래 [표2]와 같이 관할구역 2개소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었음에도 사업장 주변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그 결과를 광산구청에서 운영·관리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석면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농도 미측정 현황

연번	사업장(작업장) 명칭	작업내용	면적(㎡)	작업기간	비고
1	○○○○○ ○○공장 지붕개선 3차 공사중 지붕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석면해체·제거	102,153	2015. 4. 27 ~ 12. 31	석면 비산정도 미측정 및 결과 미공개
2	○○○○○○○ ○○○공장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석면해체·제거	8,109	2015. 5. 16 ~ 5. 27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환경생태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광산구청장은

[주의] 관할구역에서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 해체·제거작업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